

#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5
----------	----

제출년월일 : 1997. 11. 20.

제 출 자 : 사 하 구 청 장

## 1.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바뀌고 종전 보건소법의 제명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정함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나. 보건소에서 취급하지 않는 입원 관련 사항을 삭제 함(안 제8조)

다. 종전 건강진단수첩 발급시 발급신청서의 전면에 붙여 소인 하던 것을 건강진단수첩 발급대장 이면에 붙여 소인하고 주민에게 불편한 신청서 제출을 삭제함(안 제9조)

라. 제증명 발급수수료중 보건소에서 취급을 하지 않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성별 및 연령감정서, 출생·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발급 삭제함(별표)

## 3. 관계법령

가. 정부조직법 제29조

나. 지역보건법 제14조

##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한다

제3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제10조의2”를 “제10조”로 한다

제9조중 “발급신청서(별지제2호서식)에”를 “건강진단수첩 발급대장(위생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 별지제2호서식)이면에”로 한다

(별표)구분·기준 및 수수료중 2.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6.성별 및 연령감정서, 9.출생·사산또는 사태증명서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보건소법 제6</u>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지역보건법 제14</u>조 .....</p>
제2조(생략)	제2조(현행과 같음)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는 <u>보건사회</u> 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액을 적용, 정수한다	제3조(진료수가)..... <u>보건복지</u> 부장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u>보건사회부</u>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약가)..... ..... <u>보건복지부</u> .....
제5조(생략)	제5조(현행과 같음)
제6조(생략)	제6조(현행과 같음)
제7조(생략)	제7조(현행과 같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①보건의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 및 신용있는 보증인이 연서한 입원서약서(별지1호서식)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②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원료의 5~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예납시킬 수 있으며 이 보증금은 퇴원시 본인에게 정산한다</p>	<p>제8조(삭제)</p>
<p>제9조(생략)</p>	<p>제8조(현행과 같음)</p>
<p>제10조(징수방법) ①제증명발급수수료는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를 제증명등 증명서에 첨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건강진단수첩의 경우에는 발급신청서(별지제2호서식)에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소인한다</p>	<p>제9조(징수방법) ①..... ..... .....건강진단수첩발급대장(위생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규칙 제8조 별지제2호서식)이면에...</p>
<p>②(생략)</p>	<p>②(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 2(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진료비와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발부한 수수료 등은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p>	<p>제10조(현행과 같음)</p>
<p>제11조(생략)</p>	<p>제11조(현행과 같음)</p>
<p>제12조(생략)</p>	<p>제12조(현행과 같음)</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제증명 발급수수료				(별표) 제증명 발급수수료			
구 분	기준	수수료(원)		구 분	기준	수수료(원)	
		기 본 수수료	검사료			기 본 수수료	검사료
1.(생략)	1통	500	의료 보험 진료 수가 기준	1.(현행과 같음)			
2.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	500		2.(삭제)			
3.(생략)	1통	500		2.(현행과 같음)			
4.(생략)	1통	2,000		3.(현행과 같음)			
5.(생략)	1통	5,000		4.(현행과 같음)			
6.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2,000		6.(삭제)			
7.(생략)	1통	2,000		5.(현행과 같음)			
8.(생략)	1통	500		6.(현행과 같음)			
9.출생, 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	1통	500		9.(삭제)			
10.(생략)	1통	300		7.(현행과 같음)			
11.1통 초과발급	1통	100		8.(현행과 같음)			